

별지

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

귀 단체에서 2012. 6. 9~7. 6 00:00~24:00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소재 광주경영자총협회 앞 인도 및 1개 차선에서 「최저임금 보장, 노동자생존권 쟁취, 경총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」를 개최 하겠다고 2012. 6. 7 광주지방경찰청에 집회신고 한 것에 대하여 평화적인 집회 개최와 공공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보하오니, 양지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근거 :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(교통소통을 위한 제한) 1항

관할경찰서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.

□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

○ 위 근거에 따라 귀 단체에서 집회를 개최하고자 신고한 경영자총연합회 앞 중앙로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1일 평균 35,683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주요 중심도로로

○ 편도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통제하고 300명이 집결, 집회를 개최할 경우 차량정체로 중앙로는 물론 인근 천변로, 금남로까지 극심한 교통혼잡이 초래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귀 단체의 집회권과 광주시민들의 교통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.

1. 신고 된 장소(인도 및 1개 차로) 중 인도에서만 집회를 개최(차로 제한)하고 참석 인원도 100명으로 제한합니다.

2. 행진은 1개 차로를 사용하되, 대열은 3열 종대로 하여 신속하게 이동하고, 행진 중 연좌 또는 정지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 등 금지하며, 목적지 도착 후 즉시 해산해 주십시오.
 3. 옥외집회신고서에 기재된 질서유지인 14명을 반드시 두어야 하며 질서유지인은 『질서유지인』 임을 표시한 완장 등을 착용하여 참가자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「집시법」에 규정된 의무와 질서가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합니다.
 4. 집회주최자는 집시법 14조(확성기 등 사용제한) 1항, 집시법시행령 14조(확성기 등의 소음기준)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 5. 귀하가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집시법 20조 3항 의해 즉시 해산명령을 받게 됩니다.
 6. 참가자들의 안전도모는 물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경찰관의 현장지시 및 질서유지선 설정·운영에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 7. 주최측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집회신고 내용 및 교통소통을 위한 조건 통보 내용을 주지시켜 위반사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저희 경찰서에서는 집회가 질서정연하고 평온한 가운데 준법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교통관리 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